

정 관

재단법인 활농(活農)

정 관

목차

- ☐ 제 1 장 총 칙
- ☐ 제 2 장 임 원
- ☐ 제 3 장 이 사 회
- ☐ 제 4 장 재산과 회계
- ☐ 제 5 장 사 무 국
- ☐ 제 6 장 수익사업
- ☐ 제 7 장 보 칙
-
- ☐ 부 칙

재단법인 활농 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[명칭]

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활농(活農)” 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 2 조 [소재지]

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, C동 1413호(문정동, 에이치비즈니스파크)에 둔다.

제 3 조 [목적]

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건강을 위한 식생활 개선, 농산물 발효산업 육성과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자선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 [사업]

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농산물 발효산업 관련 실용 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원
2. 농산물 발효산업 관련 종사자의 자녀 및 교육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
3. 농산물 발효산업 관련 멘토링 사업
4. 국민건강을 위한 식생활 연구, 교육, 홍보, 출판사업
5.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신문, 인터넷신문 등 매체운영 사업
6. 식생활 평생교육 및 교육시설 운영사업
7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
제 5 조 [무상이익의 원칙]

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다.

제 6 조 [수혜평등의 원칙]

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.

제 2 장 임 원

제 7 조 【임원의 종류와 정수】

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상임이사 1인
3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(이사장, 상임이사를 포함한다.)
4. 감사 2인 이하

제 8 조 【임원의 선임】

- ①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
- ② 이사장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.
- ③ 법인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있으며,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참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며,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 으로 한다.
-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.

제 9 조 【임원의 선임 제한】

-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임원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,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또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 10 조 【임원의 결격사유】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1. 미성년자
 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5. 주무관청의 결정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.
- ③ 다른 업에 종사하는 자는 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.

제 11 조 【임원의 임기】

- 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 12 조 【임원의 직무】

-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,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
-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,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.)을 처리한다.
-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- 1.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- 2.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
 -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 - 5.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13 조 【임원의 해임】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
-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 임원 간의 분쟁·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4.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
- 5. 『민법』 및 『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』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

제 14 조 【이사장의 직무대행】

- ① 이사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궐위 또는 사고인 경우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이 사 회

제 15 조 【이사회의 구성】

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, 이사장, 상임이사, 이사로 구성한다.

제 16 조 【이사회의 소집】

-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-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 17 조 【이사회의 소집의 특례】
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2. 제1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 18 조 【이사회의 의결사항】

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,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·해임에 관한 사항
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4.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5.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6.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
7.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·운영·폐지 등에 관한 사항
8.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제 19 조 【이사회의결 제적사유】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20 조 【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】

-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 21 조 【이사회의 회의록】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재산과 회계

제 22 조 【재산의 구분】

-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-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.
-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 23 조 【재산의 관리】

-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4 조 【재원】

- ① 법인은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, 후원금, 찬조금, 기부금,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.
-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, 사회복지·문화·예술·교육·종교·

자산·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,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·지원 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.

③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 말까지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제 25 조 【회계연도】

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26 조 【업무보고】

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개월 이내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에 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추가 경정에 관한 사항도 이와 같다.

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제 27 조 【세계잉여금】

법인의 매 회계연도 회계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
제 28 조 【회계감사】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,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사 무 국

제 29 조 【임원의 보수】

법인은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30 조 【사무국】

① 법인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,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 6 장 수 익 사 업

제 31 조 【수익사업】

-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-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.

제 32 조 【수익사업의 기금 관리】

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,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.

제 7 장 보 칙

제 33 조 【정관의 변경】

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4 조 【해산】

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 35 조 【청산인】

법인의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.

제 36 조 【청산종결의 신고】

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37 조 【잔여재산의 처리】

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남은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·지방 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
제 38 조 【운영규정】

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39 조 【준용규정】

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『민법』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, 『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, 『비송사건절차법』과 『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』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 1 조 【시행일】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【경과조치】

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2025년 1 월 15 일